□ 배합사료 제조규정의 문제점 □

농수산부제정 사료의 보세가공 배합범위는 도입원료를 제한하여 귀중한 외화의 소비를 절약하고, 국내산 원료의 개발 및 이용도를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. 그러나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. 특히 영양학적인 면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그 불합리성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.

1. 전반적인 사료배합범위에서 식물성박류나 동물성사료의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원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최소가격 배합비율의 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. 예를 들면 동물성사료를 1%이상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 1%도 배합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런 제정으로 인하여 단가가 높은 사료를 생산하게될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다.

또한 동물성 단백질원보다 식물성 박류가 유리할 경우 박류위주의 사료제조가 불가능하게 된다.

2. 성계용 사료에 있어 수입곡류의 상한선을 56%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, 현 우리나라 여건상 실제로 옥수수외 타곡류의 사용이 어려운 실정하에서는 중에너지(2750kcal/kg : ME)수준의 제조도 이 제한으로 어려우며, 에너지부족을 메꾸기 위한 우지의 사용도 2%이상 사용이 곤란하므로 문제가 되며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. 또한 사료섭취량이 적은 소형종 및 종계에 적합한 좋은 질의 사료재료가 곤란하다.

3. 기타 원료사용에 있어 일괄적으로 1~10%로 제한한 것은 산란계의 경우 칼슘인 광물질이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녹사료, 우지의 첨가가 불가능하게 된다. 예를들면

패분	8%
골분 또는 인산칼슘제	1.5%
우지	2%
녹사료	2~3%
소금	0.3%
종합첨가제	1%

등으로 10%의 상한선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.

4. "돼지"와 "소"의 사료배합범위를 일괄적으로 같이 취급하여 육성, 성축용에 있어 식물성박류를 3~10%로 정하고 있어, 조사료의 질이 좋고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있어 농후사료를 보충먹이로 사용할 경우 또는 비유량이 많은 고능력의 경우 이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사료제조도 곤란하게 되어 있다.

이와는 반대로 고기소사료의 경우 식물성박류의 3%하한선은 오히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사료단가를 높이거나 식물성박류를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.

5. 농축사료의 경우 식물성박류의 30% 배합상한선과 소, 돼지의 일괄적처리는 문제가 될 것이다.

농축사료 본래의도가 일반사양가들의 자가 생산원료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므로 가축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고, 에너지와 단백질농축사료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%의 상한선으로 단백질의 경우 다음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백질 20% 이하의 농축사료밖에 제조할 수 없게 되어 있다.

식물성박류	30%	대두박	44%×30=13.2%
곡 류	60%	옥수수	8.7%×60=5.22%
		소 맥	12%×60=7.2 %
기 타	1−10%		0.0%

비교적 단백질함량이 높은 대두박을 사용할 경우 옥수수의 경우 18.42%, 소맥의 경우 20.4%로 충분한 단백질 농축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래의 농축사료 의도와 어긋나게 되어 있다.

6. 또한 농축사료의 경우 양계용일때 동물성사료의 첨가가 없어 아미노산의 균형을 영양학적으로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있는 사료를 만들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으며 또한 국산어분의 활용을 수입원료인 대두박같은 식물성 박류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도 어긋나게 되어 있다.